

사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발의연월일 : 2000. 3. 10.

발 의 자 : 최정경의원의외 4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용어의 개정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조정함

2. 주요골자

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350,000원에서 550,000원이내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회기수당을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이내로 함(안 제6조)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 제3조 조제목·제1항·제2항, 제6조, 제9조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350,000원으로”를 “550,000원이내로”로 한다.

제6조중 “50,000원으로”를 “70,000원이내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사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 ----- -----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생략)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는 월 350,000 원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550,000원 ----- 이내로 --.
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회의수당은 회기중 사천시의회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3조 (회기수당 지급) ① 회기수당----- ----- ----- ----- ----- ----- ② 회기수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제6조 (회기수당 -----) ----- ----- 회기수당----- ----- 70,000원 이내로 ---.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준용) ----- ----- ----- 회기수당 ----- ----- -----
< 신 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 정 전)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19,500	18,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고,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 정 후)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u>22,000</u>	18,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고,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